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관리대상물질	
	설치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 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관리대상 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배출 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배출가스 처리시설	
			규모	
			수량	
기타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시설관리기준 제외사유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부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1부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1부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